|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해외비정부조직 경내활동 관리법**(2016년 4월 28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서 통과)목 록제1장 총칙제2장 등기와 비안(備案)제3장 활동규범제4장 편리조치제5장 감독관리제6장 법률책임제7장 부칙제1장 총칙제1조 해외비정부조직의 중국 내 활동을 규율 및 유도하고 해외비정부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다.제2조 해외비정부조직의 중국 내 활동은 이 법의 관할을 받는다.이 법에서 해외비정부조직이라 함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성립된 기금회, 사회단체, 두뇌집단기구 등 비영리성•비정부성 사회조직을 지칭한다.제3조 해외비정부조직은 이 법에 따라 경제,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 환경보호 등 분야와 빈곤구제, 재난구조 등 영역에서 공익사업의 발전에 유리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제4조 해외비정부조직이 중국 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전개하는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제5조 해외비정부조직은 중국 내에서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중국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국가의 통일, 안전과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여서는 아니되며 중국의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 및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해외비정부조직은 중국 내에서 영리성 활동, 정부 활동에 종사하거나 영리성 활동, 정부 활동을 후원하여서는 아니되며 불법에 종사하거나 종교 활동을 후원하여서는 아니된다.제6조 국무원 공안부서와 성급 인민정부의 공안기관은 해외비정부조직이 중국 내에서 전개하는 활동의 등기관리기관이다.국무원 관련 부서와 기관, 성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와 기관은 해외비정부조직이 중국 내에서 전개하는 활동의 업무주관기관이다.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공안기관과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해외비정부조직이 중국 내에서 전개하는 활동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국가는 해외비정부조직 감독관리 업무조율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해외비정부조직이 중국 내에서 전개하는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및 서비스 편리 중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연구, 조율, 해결한다.제8조 국가는 중국의 공익사업 발전에 뛰어난 기여를 한 해외비정부조직을 표창한다.제2장 등기와 비안(備案)제9조 해외비정부조직은 중국 내에서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법에 의거하여 대표기구를 등기•설립하여야 한다. 대표기구를 등기•설립하지 아니한 해외비정부조직이 중국 내에서 임시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한다.해외비정부조직은 대표기구의 등기•설립, 임시 활동 전개를 위한 비안(備案)을 거치지 아니하고 중국 경내에서 활동을 전개하거나 변칙적으로 전개하여서는 아니되며 중국 내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에게 의뢰, 후원하거나 변칙적으로 의뢰, 후원하는 방식으로 중국 내에서 활동을 전개하여서는 아니된다.제10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해외비정부조직은 업무범위, 활동지역 및 활동 전개의 수요에 근거하여 중국 내 대표기구의 등기•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1) 해외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조직이어야 한다.(2)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3) 정관에 규정된 취지와 업무범위가 공익사업의 발전에 유리하여야 한다.(4) 해외에서 2년 이상 존속하였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전개한 조직이어야 한다.(5) 법률•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조건.제11조 해외비정부조직이 대표기구의 등기•설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업무주관기관의 명록은 국무원 공안부서와 성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공표한다.제12조 해외비정부조직은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기관리기관에 대표기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표기구 설립등기 신청 시 등기관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2)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서류와 자료;(3) 설립하고자 하는 대표기구의 수석대표의 신분증명, 이력서 및 무범죄기록 증명서 또는 성명서;(4) 설립하고자 하는 대표기구의 주소 증명서류;(5) 자금 출처 증명서류;(6) 업무주관기관의 동의서;(7) 법률•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서류와 자료.등기관리기관은 해외비정부조직의 대표기구 설립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수요에 따라 전문가를 초빙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등기관리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등기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13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의 등기를 허가하는 경우 등기기관은 등기증서를 발급하고 사회에 공고한다.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명칭;(2) 주소;(3) 업무범위;(4) 활동지역;(5) 수석대표;(6) 업무주관기관.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는 등기증서를 근거로 법에 따라 세무등기를 이행하고 도장을 제작하며 중국 내의 은행에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세무등기증 복사본, 도장 양식 및 은행계좌를 등기관리기관에 제출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한다.제14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는 등기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기관리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제1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등기관리기관이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 등기를 말소하고 사회에 공고한다.(1) 해외비정부조직이 대표기구를 취소하는 경우;(2) 해외비정부조직이 종료되는 경우;(3)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등기를 취소당하거나 등기증서를 취소당하는 경우;(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종료되는 경우.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해 대표기구를 설립한 해외비정부조직은 뒤처리를 적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는 법인 자격이 없으며 그와 연관된 관련 법률책임은 당해 해외비정부조직이 부담한다.제16조 중국 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하지 아니한 해외비정부조직이 중국 내에서 임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중국의 국가기관, 인민단체, 사업기관, 사회조직(이하 '중국측 협력기관'으로 통칭)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제17조 해외비정부조직이 전개하는 임시 활동의 중국측 협력기관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임시 활동을 전개하기 15일 전에 그 소재지 등기관리기관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비안(備案) 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해외비정부조직의 적법한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자료;(2) 해외비정부조직과 중국측 협력기관과이 체결한 서면계약;(3) 임시 활동의 명칭, 취지, 지역 및 기한 등 관련 자료;(4) 프로젝트 경비와 자금 출처 증명서류 및 중국측 협력기관의 은행계좌;(5) 중국측 협력기관이 획득한 비준문서;(6) 법률•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서류와 자료.재민 구제, 구조 등 긴급상황에서 임시 활동의 전개가 필요한 경우 비안(備案) 시간은 전 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임시 활동의 기한이 1년을 넘기지 아니하며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등기관리기관은 비안(備案)한 임시 활동이 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체없이 중국측 협력기관에 임시 활동을 중단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제3장 활동규범제18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는 등기된 명칭으로 등기된 업무범위와 활동지역 내에서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비정부조직은 중국 내에 분지기구를 설립할 수 없다. 제19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는 매년 12월 31일 전에 프로젝트 실시, 자금 사용 등 내용을 포함한 차기연도 활동계획을 업무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득한 후 10일 내에 등기관리기관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활동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등기관리기관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제20조 해외비정부조직은 중국 내에서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중국측 협력기관, 수익자에게 중국 법률•법규에 위배되는 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제21조 해외비정부조직의 중국 내 활동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포함한다.(1) 자금 출처가 합법적인 해외 자금;(2) 중국 내 은행 예금 이자;(3)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기타 자금.해외비정부조직은 중국 내에서 활동함에 있어 전 항에 규정한 자금 이외의 기타 자금을 취득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해외비정부조직 및 그 대표기구는 중국 내에서 모금을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제22조 대표기구를 설립한 해외비정부조직은 등기관리기관에 비안(備案)한 대표기구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중국 내에 사용되는 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임시 활동을 전개하는 해외비정부조직은 중국측 협력기관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중국 내에 사용되는 자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기장하고 특별 자금은 특정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해외비정부조직, 중국측 협력기관 및 개인은 그 어떠한 형식으로도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은행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국 내에서 프로젝트 활동 자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제23조 해외비정부조직은 등기한 대표기구의 업무범위, 활동지역 또는 중국측 협력기관과 협의한 약정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제24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는 중국의 통일된 회계제도를 집행하여야 하며 중국 회계 종업 자격을 구비한 자를 초빙하여 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재무회계보고서는 중국 내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제25조 해외비정부조직은 중국 내에서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중국의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한수지를 처리하여야 한다.제26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세무등기, 납세신고 및 세금납부 등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제27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는 중국 내에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채용한 직원의 정보를 업무주관기관과 등기관리기관에 보고 및 비안(備案)하여야 한다.제28조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와 임시 활동을 전개하는 해외비정부조직은 중국 내에서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제29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는 1명의 수석대표를 두어야 하며 업무 수요에 따라 1명~3명의 대표를 둘 수 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석대표, 대표 직무를 맡을 수 없다.(1) 민사행위 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2) 범죄기록이 있는 자;(3) 법에 의거하여 등기를 취소당하였거나 등기증서를 취소당한 대표기구의 수석대표, 대표이고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4) 법률•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의 경우.제30조 임시 활동을 전개하는 해외비정부조직은 비안(備案)을 거친 명칭으로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해외비정부조직, 중국측 협렵기관은 임시 활동이 끝난 후 30일 내에 활동 상황, 자금사용 상황 등을 서면으로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제31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는 매년 1월 31일 전에 직전연도의 업무보고서를 업무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주관기관이 의견서를 발행한 후 3월 31일 전에 등기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연도검사를 받아야 한다.연도업무보고서는 감사를 거친 재무회계보고서, 활동 전개 상황 및 인력•기구 변동 상황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는 등기관리기관의 통합 웹사이트를 통하여 연도업무보고서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제32조 중국 내 그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대표기구와 비안(備案) 절차 없이 임시 활동을 전개하는 해외비정부조직의 의뢰 또는 후원을 수락하여서는 아니되며 해외비정부조직이 중국 내에서 전개하는 활동을 대리 또는 변칙적으로 대리하여서는 아니된다.제4장 편리조치제33조 국가는 해외비정부조직이 중국 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전개하는 활동을 보장하고 지지한다. 각 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해외비정부조직이 중국 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전개하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편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제34조 국무원 공안부서와 성급 인민정부의 공안기관은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해외비정부조직 활동영역 및 프로젝트 목록을 제정하고 업무주관기관 명록을 공표함으로써 해외비정부조직의 활동 전개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제3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해외비정부조직을 위한 정책자문, 활동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등기관리기관은 통합 웹사이트를 통하여 해외비정부조직의 대표기구 설립 신청 절차와 임시 활동 전개 비안(備案) 절차를 공표함으로써 해외비정부조직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6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조세특혜 등 정책을 누린다.제37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의 연도검사는 비용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제38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의 외국 국적의 수석대표와 대표는 등기증서, 대표증명서류 등을 근거로 법에 의거하여 취업 등 업무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감독관리제39조 해외비정부조직은 중국 내에서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공안기관, 관련 부서와 업무주관기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제40조 업무주관기관은 해외비정부조직의 대표기구 설립, 등기사항 변경, 연도업무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발행하고 해외비정부조직 및 그 대표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전개하는 활동을 지도, 감독하며 해외비정부조직 및 그 대표기구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안기관 등 부서의 조사처리 업무에 협조한다.제41조 공안기관은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의 등기와 연도검사, 해외비정부조직의 임시 활동 비안(備案)을 담당하며 해외비정부조직 및 그 대표기구의 불법행위를 조사처리한다.공안기관은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의 수석대표 및 기타 담당자와 면담할 수 있다.(2) 해외비정부조직의 중국 내 주소지, 활동장소에 진입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3) 조사대상 사건과 연관된 조직과 개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고 조사대상 사건의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4) 조사대상 사건과 연관된 서류와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하고 전이, 소각, 은닉 또는 변조될 우려가 있는 서류와 자료를 봉인보관할 수 있다.(5) 불법활동과 연관된 혐의가 있는 장소, 시설 또는 재물을 압류할 수 있다. 제42조 공안기관은 조사대상 사건과 연관된 조직과 개인의 은행계좌를 조회할 수 있으며 관련 금융기구, 금융감독관리기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불법활동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은행계좌 내의 자금에 대하여 산하에 구(區)를 두고 있는 시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인민법원에 법에 의거한 동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범죄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은행계좌 내의 자금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동결 조치를 취한다.제43조 국가안전, 외교•외사, 재정, 금융감독관리, 세관, 세무, 외국전문가 등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해외비정부조직 및 그 대표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제44조 국무원 자금세탁 방지 행정주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 중국측 협력기관 및 해외비정부조직의 자금을 수령하는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이 은행계좌를 개설,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방지 및 반테러 융자 법률규정을 준수한 상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6장 법률책임제45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 임시 활동을 전개하는 해외비정부조직 또는 중국측 협력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산하에 구(區)를 두고 있는 시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경고를 주거나 기한부 활동 중단을 명하며 불법 재물과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경위가 심각한 경우 등기관리기관이 등기증서를 취소하고 임시 활동을 취체(取締)한다.(1) 규정에 따라 변경등기, 비안(備案)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등기 또는 비안(備案)한 명칭, 업무범위, 활동지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3) 비영리성 활동에 종사하거나 비영리성 활동을 후원하거나 모금을 진행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4) 규정을 어기고 자금을 취득, 사용하거나 규정에 따라 은행계좌를 개설,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5) 규정에 따라 연도활동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연도업무보고서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6) 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규정에 따라 감독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 임시 활동을 전개하는 해외비정부조직 또는 중국측 협력기관이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법수단으로 대표기구 등기증서를 취득하거나 임시 활동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거나 등기증서•도장을 위조, 변조, 매매, 임대, 대여하는 경우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제4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산하에 구(區)를 두고 있는 시급 이상 인민정부의 공안기관이 취체(取締)하거나 불법행위의 중단을 명한다.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경고를 주며 경위가 심각한 경우 10일 이하의 구류(拘留)에 처한다.(1) 등기, 비안(備案)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 해외비정부조직의 명의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2) 등기 또는 등기증서를 취소당하였거나 말소등기 후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의 명의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3) 해외비정부조직의 임시 활동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임시 활동이 취체(取締)된 후 중국 내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4) 해외비정부조직이 대표기구 등기 절차, 임시 활동 비안(備案)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국 내 조직 또는 개인에게 의뢰하거나 중국 내 조직 또는 개인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중국 내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중경내 조직과 개인이 해외비정부조직이 대표기구 등기 수속, 임시 활동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지하고도 그와 협력하거나 그의 의뢰 또는 후원을 수락하거나 그의 활동 전개, 프로젝트 활동 자금 수취•지급을 대리 또는 변칙적으로 대리하는 경우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제47조 해외비정부조직,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등기관리기관이 등기증서를 취소하거나 임시 활동을 취체한다. 범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산하에 구(區)를 둔 시급 이상 인민정부의 공안기관이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를 15일 이하의 구류(拘留)에 처한다.(1) 법률•법규의 실시 거부를 선동하는 경우;(2) 불법으로 국가비밀을 취득하는 경우;(3) 요언을 유포하거나 비방하거나 기타 유해정보를 발표, 전파하거나 국가안전을 파괴하거나 국가이익에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4) 정치 활동에 종사하거나 정치 활동을 후원하거나 불법으로 종교 활동에 종사하거나 종교 활동을 후원하는 경우;(5) 국가안전을 파괴하거나 국가이익 또는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초래하는 기타의 경우.해외비정부조직,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가 국가 분열, 국가통일 파괴, 국가정권 전복 등 범죄행위를 행하는 경우 등기관리기관이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한다.제48조 해외비정부조직,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등기 또는 등기증서를 취소당하거나 임시 활동이 취체(取締)당하는 경우 취소일 또는 취체(取締)일로부터 5년 내에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립하거나 중국 내에서 임시 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대표기구 등기 수속, 임시 활동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활동을 전개하는 해외비정부조직은 취체(取締)일로부터 5년 내에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립하거나 중국 내에서 임시 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해외비정부조직이 이 법 제47조에 규정한 상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무원 공안부서는 그를 블랙 리스트에 추가하여 중국에 대표기구를 설립하거나 중국 내에서 임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제49조 해외비정부조직 대표기구가 기한부 활동 중단을 명받은 경우 등기관리기관이 그 등기증서, 도장 및 재무증빙을 봉인보관한다. 등기 또는 등기증서를 취소당한 경우 등기관리기관이 그 등기증서, 도장을 회수하고 폐기를 공고한다.제50조 외국인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기한부 출국, 강제송환 또는 강제추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51조 공안기관, 관련 부서와 업무주관기관 및 그 직원이 해외비정부조직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 중에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법률책임을 추궁한다.제52조 이 법의 규정에 대한 위반이 치안관리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공안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치안관리 처벌을 내린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제53조 해외의 학교, 병원,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 연구기구 또는 학술단체와 경내의 학교, 병원, 자연과학 및 공학기술 연구기구 또는 학술단체가 추진하는 교류협력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전 항에 규정한 해외의 학교, 병원, 기구 및 조직의 중국 내 활동이 이 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법률책임을 추궁한다.제54조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境外非政府组织境内活动管理法**（2016年4月28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次会议通过） 目 录 第一章　总 则 第二章 登记和备案 第三章　活动规范 第四章 便利措施 第五章 监督管理 第六章 法律责任 第七章　附 则第一章 总 则第一条 为了规范、引导境外非政府组织在中国境内的活动，保障其合法权益，促进交流与合作，制定本法。 第二条 境外非政府组织在中国境内开展活动适用本法。 本法所称境外非政府组织，是指在境外合法成立的基金会、社会团体、智库机构等非营利、非政府的社会组织。 第三条 境外非政府组织依照本法可以在经济、教育、科技、文化、卫生、体育、环保等领域和济困、救灾等方面开展有利于公益事业发展的活动。 第四条 境外非政府组织在中国境内依法开展活动，受法律保护。 第五条 境外非政府组织在中国境内开展活动应当遵守中国法律，不得危害中国的国家统一、安全和民族团结，不得损害中国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和公民、法人以及其他组织的合法权益。 境外非政府组织在中国境内不得从事或者资助营利性活动、政治活动，不得非法从事或者资助宗教活动。 第六条 国务院公安部门和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是境外非政府组织在中国境内开展活动的登记管理机关。 国务院有关部门和单位、省级人民政府有关部门和单位，是境外非政府组织在中国境内开展活动的相应业务主管单位。 第七条 县级以上人民政府公安机关和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对境外非政府组织在中国境内开展活动依法实施监督管理、提供服务。 国家建立境外非政府组织监督管理工作协调机制，负责研究、协调、解决境外非政府组织在中国境内开展活动监督管理和服务便利中的重大问题。 第八条 国家对为中国公益事业发展做出突出贡献的境外非政府组织给予表彰。第二章 登记和备案第九条 境外非政府组织在中国境内开展活动，应当依法登记设立代表机构；未登记设立代表机构需要在中国境内开展临时活动的，应当依法备案。 境外非政府组织未登记设立代表机构、开展临时活动未经备案的，不得在中国境内开展或者变相开展活动，不得委托、资助或者变相委托、资助中国境内任何单位和个人在中国境内开展活动。 第十条 境外非政府组织符合下列条件，根据业务范围、活动地域和开展活动的需要，可以申请在中国境内登记设立代表机构： （一）在境外合法成立； （二）能够独立承担民事责任； （三）章程规定的宗旨和业务范围有利于公益事业发展； （四）在境外存续二年以上并实质性开展活动； （五）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第十一条 境外非政府组织申请登记设立代表机构，应当经业务主管单位同意。 业务主管单位的名录由国务院公安部门和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会同有关部门公布。 第十二条 境外非政府组织应当自业务主管单位同意之日起三十日内，向登记管理机关申请设立代表机构登记。申请设立代表机构登记，应当向登记管理机关提交下列文件、材料： （一）申请书； （二）符合本法第十条规定的证明文件、材料； （三）拟设代表机构首席代表的身份证明、简历及其无犯罪记录证明材料或者声明； （四）拟设代表机构的住所证明材料； （五）资金来源证明材料； （六）业务主管单位的同意文件； （七）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文件、材料。 登记管理机关审查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设立申请，根据需要可以组织专家进行评估。 登记管理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六十日内作出准予登记或者不予登记的决定。 第十三条 对准予登记的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登记管理机关发给登记证书，并向社会公告。登记事项包括： （一）名称； （二）住所； （三）业务范围； （四）活动地域； （五）首席代表； （六）业务主管单位。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凭登记证书依法办理税务登记，刻制印章，在中国境内的银行开立银行账户，并将税务登记证件复印件、印章式样以及银行账户报登记管理机关备案。 第十四条 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需要变更登记事项的，应当自业务主管单位同意之日起三十日内，向登记管理机关申请变更登记。 第十五条 有下列情形之一的，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由登记管理机关注销登记，并向社会公告： （一）境外非政府组织撤销代表机构的； （二）境外非政府组织终止的；（三）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依法被撤销登记或者吊销登记证书的； （四）由于其他原因终止的。 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注销登记后，设立该代表机构的境外非政府组织应当妥善办理善后事宜。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不具有法人资格，涉及相关法律责任的，由该境外非政府组织承担。 第十六条 境外非政府组织未在中国境内设立代表机构，在中国境内开展临时活动的，应当与中国的国家机关、人民团体、事业单位、社会组织（以下称中方合作单位）合作进行。 第十七条 境外非政府组织开展临时活动，中方合作单位应当按照国家规定办理审批手续，并在开展临时活动十五日前向其所在地的登记管理机关备案。备案应当提交下列文件、材料： （一）境外非政府组织合法成立的证明文件、材料； （二）境外非政府组织与中方合作单位的书面协议； （三）临时活动的名称、宗旨、地域和期限等相关材料； （四）项目经费、资金来源证明材料及中方合作单位的银行账户； （五）中方合作单位获得批准的文件； （六）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文件、材料。 在赈灾、救援等紧急情况下，需要开展临时活动的，备案时间不受前款规定的限制。临时活动期限不超过一年，确实需要延长期限的，应当重新备案。 登记管理机关认为备案的临时活动不符合本法第五条规定的，应当及时通知中方合作单位停止临时活动。第三章 活动规范 第十八条 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应当以登记的名称，在登记的业务范围和活动地域内开展活动。 境外非政府组织不得在中国境内设立分支机构，国务院另有规定的除外。 第十九条 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应当于每年12月31日前将包含项目实施、资金使用等内容的下一年度活动计划报业务主管单位，业务主管单位同意后十日内报登记管理机关备案。特殊情况下需要调整活动计划的，应当及时向登记管理机关备案。 第二十条 境外非政府组织在中国境内开展活动不得对中方合作单位、受益人附加违反中国法律法规的条件。 第二十一条 境外非政府组织在中国境内活动资金包括： （一）境外合法来源的资金； （二）中国境内的银行存款利息； （三）中国境内合法取得的其他资金。 境外非政府组织在中国境内活动不得取得或者使用前款规定以外的资金。 境外非政府组织及其代表机构不得在中国境内进行募捐。第二十二条 设立代表机构的境外非政府组织应当通过代表机构在登记管理机关备案的银行账户管理用于中国境内的资金。 开展临时活动的境外非政府组织应当通过中方合作单位的银行账户管理用于中国境内的资金，实行单独记账，专款专用。 未经前两款规定的银行账户，境外非政府组织、中方合作单位和个人不得以其他任何形式在中国境内进行项目活动资金的收付。 第二十三条 境外非政府组织应当按照代表机构登记的业务范围、活动地域或者与中方合作单位协议的约定使用资金。 第二十四条 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应当执行中国统一的会计制度，聘请具有中国会计从业资格的会计人员依法进行会计核算。财务会计报告应当经中国境内会计师事务所审计。 第二十五条 境外非政府组织在中国境内开展活动，应当按照中国有关外汇管理的规定办理外汇收支。 第二十六条 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应当依法办理税务登记、纳税申报和税款缴纳等事项。 第二十七条 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在中国境内聘用工作人员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并将聘用的工作人员信息报业务主管单位和登记管理机关备案。 第二十八条 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开展临时活动的境外非政府组织不得在中国境内发展会员，国务院另有规定的除外。 第二十九条 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应当设一名首席代表，可以根据业务需要设一至三名代表。 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担任首席代表、代表： （一）无民事行为能力或者限制民事行为能力的； （二）有犯罪记录的； （三）依法被撤销登记、吊销登记证书的代表机构的首席代表、代表，自被撤销、吊销之日起未逾五年的； （四）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情形。 第三十条 开展临时活动的境外非政府组织，应当以经备案的名称开展活动。 境外非政府组织、中方合作单位应当于临时活动结束后三十日内将活动情况、资金使用情况等书面报送登记管理机关。 第三十一条 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应当于每年1月31日前向业务主管单位报送上一年度工作报告，经业务主管单位出具意见后，于3月31日前报送登记管理机关，接受年度检查。年度工作报告应当包括经审计的财务会计报告、开展活动的情况以及人员和机构变动的情况等内容。 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应当将年度工作报告在登记管理机关统一的网站上向社会公开。 第三十二条 中国境内任何单位和个人不得接受未登记代表机构、开展临时活动未经备案的境外非政府组织的委托、资助，代理或者变相代理境外非政府组织在中国境内开展活动。第四章 便利措施第三十三条 国家保障和支持境外非政府组织在中国境内依法开展活动。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为境外非政府组织在中国境内依法开展活动提供必要的便利和服务。 第三十四条 国务院公安部门和省级人民政府公安机关会同有关部门制定境外非政府组织活动领域和项目目录，公布业务主管单位名录，为境外非政府组织开展活动提供指引。 第三十五条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依法为境外非政府组织提供政策咨询、活动指导服务。登记管理机关应当通过统一的网站，公布境外非政府组织申请设立代表机构以及开展临时活动备案的程序，供境外非政府组织查询。 第三十六条 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依法享受税收优惠等政策。 第三十七条 对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进行年度检查不得收取费用。 第三十八条 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首席代表和代表中的境外人员，可以凭登记证书、代表证明文件等依法办理就业等工作手续。第五章 监督管理 第三十九条 境外非政府组织在中国境内开展活动，应当接受公安机关、有关部门和业务主管单位的监督管理。 第四十条 业务主管单位负责对境外非政府组织设立代表机构、变更登记事项、年度工作报告提出意见，指导、监督境外非政府组织及其代表机构依法开展活动，协助公安机关等部门查处境外非政府组织及其代表机构的违法行为。第四十一条 公安机关负责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的登记、年度检查，境外非政府组织临时活动的备案，对境外非政府组织及其代表机构的违法行为进行查处。公安机关履行监督管理职责，发现涉嫌违反本法规定行为的，可以依法采取下列措施： （一）约谈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的首席代表以及其他负责人； （二）进入境外非政府组织在中国境内的住所、活动场所进行现场检查； （三）询问与被调查事件有关的单位和个人，要求其对与被调查事件有关的事项作出说明； （四）查阅、复制与被调查事件有关的文件、资料，对可能被转移、销毁、隐匿或者篡改的文件、资料予以封存； （五）查封或者扣押涉嫌违法活动的场所、设施或者财物。第四十二条 公安机关可以查询与被调查事件有关的单位和个人的银行账户，有关金融机构、金融监督管理机构应当予以配合。对涉嫌违法活动的银行账户资金，经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公安机关负责人批准，可以提请人民法院依法冻结；对涉嫌犯罪的银行账户资金，依照《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的规定采取冻结措施。 第四十三条 国家安全、外交外事、财政、金融监督管理、海关、税务、外国专家等部门按照各自职责对境外非政府组织及其代表机构依法实施监督管理。 第四十四条 国务院反洗钱行政主管部门依法对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中方合作单位以及接受境外非政府组织资金的中国境内单位和个人开立、使用银行账户过程中遵守反洗钱和反恐怖主义融资法律规定的情况进行监督管理。第六章 法律责任 第四十五条 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开展临时活动的境外非政府组织或者中方合作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公安机关给予警告或者责令限期停止活动；没收非法财物和违法所得；情节严重的，由登记管理机关吊销登记证书、取缔临时活动： （一）未按照规定办理变更登记、备案相关事项的；（二）未按照登记或者备案的名称、业务范围、活动地域开展活动的；（三）从事、资助营利性活动，进行募捐或者违反规定发展会员的； （四）违反规定取得、使用资金，未按照规定开立、使用银行账户或者进行会计核算的； （五）未按照规定报送年度活动计划、报送或者公开年度工作报告的； （六）拒不接受或者不按照规定接受监督检查的。 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开展临时活动的境外非政府组织或者中方合作单位以提供虚假材料等非法手段，取得代表机构登记证书或者进行临时活动备案的，或者有伪造、变造、买卖、出租、出借登记证书、印章行为的，依照前款规定处罚。第四十六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公安机关予以取缔或者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非法财物和违法所得；对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情节严重的，处十日以下拘留： （一）未经登记、备案，以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境外非政府组织名义开展活动的； （二）被撤销登记、吊销登记证书或者注销登记后以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名义开展活动的； （三）境外非政府组织临时活动期限届满或者临时活动被取缔后在中国境内开展活动的；（四）境外非政府组织未登记代表机构、临时活动未备案，委托、资助中国境内单位和个人在中国境内开展活动的。中国境内单位和个人明知境外非政府组织未登记代表机构、临时活动未备案，与其合作的，或者接受其委托、资助，代理或者变相代理其开展活动、进行项目活动资金收付的，依照前款规定处罚。第四十七条 境外非政府组织、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由登记管理机关吊销登记证书或者取缔临时活动；尚不构成犯罪的，由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公安机关对直接责任人员处十五日以下拘留： （一）煽动抗拒法律、法规实施的； （二）非法获取国家秘密的； （三）造谣、诽谤或者发表、传播其他有害信息，危害国家安全或者损害国家利益的； （四）从事或者资助政治活动，非法从事或者资助宗教活动的； （五）有其他危害国家安全、损害国家利益或者社会公共利益情形的。境外非政府组织、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有分裂国家、破坏国家统一、颠覆国家政权等犯罪行为的，由登记管理机关依照前款规定处罚，对直接责任人员依法追究刑事责任。 第四十八条 境外非政府组织、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违反本法规定被撤销登记、吊销登记证书或者临时活动被取缔的，自被撤销、吊销、取缔之日起五年内，不得在中国境内再设立代表机构或者开展临时活动。未登记代表机构或者临时活动未备案开展活动的境外非政府组织，自活动被取缔之日起五年内，不得在中国境内再设立代表机构或者开展临时活动。 有本法第四十七条规定情形之一的境外非政府组织，国务院公安部门可以将其列入不受欢迎的名单，不得在中国境内再设立代表机构或者开展临时活动。 第四十九条 境外非政府组织代表机构被责令限期停止活动的，由登记管理机关封存其登记证书、印章和财务凭证。对被撤销登记、吊销登记证书的，由登记管理机关收缴其登记证书、印章并公告作废。 第五十条 境外人员违反本法规定的，有关机关可以依法限期出境、遣送出境或者驱逐出境。第五十一条 公安机关、有关部门和业务主管单位及其工作人员在境外非政府组织监督管理工作中，不履行职责或者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追究法律责任。 第五十二条 违反本法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第七章 附 则 第五十三条 境外学校、医院、自然科学和工程技术的研究机构或者学术组织与境内学校、医院、自然科学和工程技术的研究机构或者学术组织开展交流合作，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前款规定的境外学校、医院、机构和组织在中国境内的活动违反本法第五条规定的，依法追究法律责任。 第五十四条 本法自2017年1月1日起施行。 |